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주택관리 규정

제정 1989. 9. 20.

개정 2015. 4. 1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에 소재하는 주택의 관리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택) 이 규정에서 주택이라 함은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부속기관의 현장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거용 건물을 말한다.

제3조(입주자격) 입주 자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업생명과학대학 부속기관의 현장관리를 목적으로 근무하는 서울대학교 법인 교직원
2. 미입주 주택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외 직원의 입주가 가능하며, 현장에 상근하는 일용근무자 및 학생이라도 현장관리를 목적으로 해당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입주할 수 있다.

제4조(입주기간) ① 입주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현장관리를 목적으로 입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전항의 입주자는 입주기간이 만료되면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신청할 수 있다.

제5조(주택의 사용료) 주택의 사용료는 서울대학교 재산관리규칙 제33조 내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해 산출하여 운영한다.

제6조(경비부담) ①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1. 전기료, 수도료, 연료비, 오물수거료, 청소료 등 개인이 사용한 경비
2. 개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훼손 망실의 경우 그 보상

- ② 다음의 경비는 대학에서 부담한다.

주택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대수리비 등 자본적 경비

- ③ 대학 또는 입주자 부담이 분명치 않은 경비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7조(입주자 준수사항) 입주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며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양도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의 금지
2. 주택의 그 부속시설 구조 변경의 금지
3. 소음 및 위험물 사용의 금지

제8조(입주신청) ① 입주 희망자는 입주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소속 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학장에게 제출한다.

② 관련 부속기관에 근무하는 입주자 이외에는 입주신청서에 현 거주지의 주민등록 등본 및 건축물대장등본 각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입주자 결정) 입주자는 주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10조(입주) 입주 승인을 받은 자는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 및 입주신고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한다.

제11조(주택운영위원회) ① 주택의 운영에 관하여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택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8인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학장이 되고, 위원장은 위원회 소집과 그 회의를 장리한다.

④ 위원은 교무부학장, 학생부학장, 기획부학장, 행정실장, 농장장, 학술림장, 실험목장장 및 수목원장이 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주자 선정기준의 심의 및 선정
2. 수리비 부담의 한계가 모호할 경우 부담자의 심의
3. 기타 주택운영에 필요한 사항

⑦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서무행정실 소속 서울대학교 법인 직원 중에서 학장이 지명한다.

제12조(퇴거) ①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즉시 퇴거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규정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1개월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1. 입주기간 만료
2. 퇴직

3. 인사발령으로 부속시설 이외의 타부서에 근무하게 된 자
 4. 본 규정에 정한 의무 및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위원회의 결의로 퇴거를 명할 때
 5. 기타 퇴거시킬 필요가 있다고 위원회가 결의한 때
- ② 퇴거 통보를 받은 후 퇴거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다.
- ③ 퇴거 시에도 퇴거신고서(별지 제4호 서식)를 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1989.9.20.)

- ① 이 규정은 1989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규정 시행이전에 주택에 입주한 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입주한 것으로 본다.
- ③ 시행일 현재 입주기간이 2년을 초과한 입주자로서 재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4조 2항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부칙(제101호, 2015.4.13.)

이 규정은 2015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주택임주신청서

1. 소 속 :
2. 직 급 :
3. 성 명 :
4. 최초발령일자 :
5. 희망입주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6. 입주 가족 수 : 명
7. 현 주택 관계 : 유주택, 무주택(전세, 월세), 기타()

가족관계	관 계	성 명	연 령	직 업	비 고

8. 무주택 증명 : 현 거주지의 주민등록등본 및 건축물대장등본 각 1통 첨부.
9. 입주신청사유 : 뒷면에 기재

본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주택에 입주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 : (인)

입주신청사유가 확실하여 위의 사실이 틀림없으므로 추천합니다.

행정실장 : (인)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장 귀하

별지 제1호 서식(뒷면)

신청사유

※ 본 사유란에는 입주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호 서식

서 약 서

○ 소 속 :

○ 직 급 :

○ 성 명 :

본인은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주택에 입주함에 있어서 주택관리규정(이하 규정)과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주자격의 상실, 퇴거사유의 발생 및 퇴거 통지를 받은 때는 1개월 이내에 퇴거하며, 퇴거 15일 전에 퇴거신청서를 제출한다.
2. 직계가족 이외의 자와 동거를 제한하며 동거인의 변동이 있을 시는 통보한다.
3. 선량한 사용자의 주의로서 주택을 보호 유지하며 화재의 예방, 전기, 수도 절약과 주택 내의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4. 양도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 주택 및 부속시설의 구조변경, 소음 및 위험물의 사용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5. 내부의 소모성 시설의 재료비, 수리비 및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훼손 및 망실의 경우 그 비용을 부담한다.
6. 입주 기간 동안 주택 마련을 위한 저축을 이행한다.
7. 입주 기간 동안 각종 사고예방에 각별히 유의하며 사고 발생에 따른 모든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다.

입주 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 (인)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입주신고서

○ 소 속 :

○ 직 급 :

○ 성 명 :

우리대학 주택에 입주하고자 다음과 같이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1. 입주주택 :

2. 입주자 :

3. 입주(예정)일자 : 20 년 월 일

붙임 : 서약서 1부.

20 년 월 일

입 주 자 : (인)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퇴거신고서

○ 소 속 :

○ 직 급 :

○ 성 명 :

우리대학 주택에서 퇴거하고자 다음과 같이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1. 입주주택 :

2. 입주자 :

3. 입주일자 : 20 년 월 일

4. 퇴거(예정)일자 :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퇴 거 자 : (인)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서면심의결과통보서

1. 의 견 :

2. 심의결과(해당란에 표시)

안 건	심 의 결 과	
	통 과	보 류

위와 같이 서면 심의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농업생명과학대학 주택운영위원회 위원 :

(인)

서울대학교 주택운영위원장 귀하